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97
----------	------

제출연월일: 2017. 9. 28.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안전관리 등 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객석에서 춤 행위가 허용되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및 지정·변경 신청(안 제4조~제6조)
- 다. 춤 허용업소는 공간, 방음, 소방 등의 안전기준 등(안 제7조)
- 라. 춤 허용업소 춤추는 시간은 영업시간(안 제8조)
- 마.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안 제9조~제10조)

3. 근거법규

-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2017. 8. 14. ~ 2017. 9. 4.(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울산광역시 중구 상업지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지켜야 한다.
5. 비상구는 영업시간에 상시 열리도록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어야 한다.
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은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7.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안전요원으로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8. 정전 발생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 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2개, 객석 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①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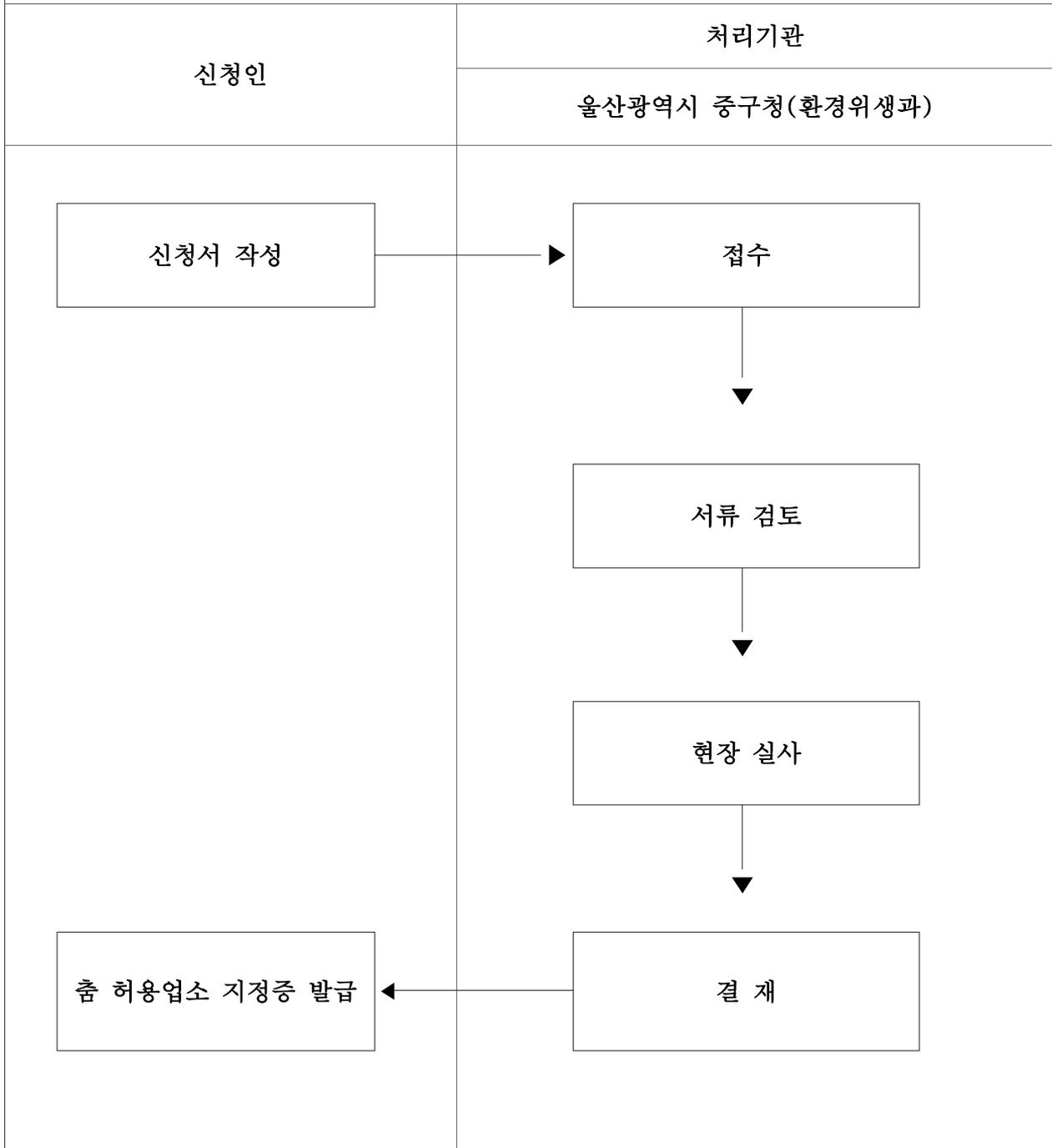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춤 허용업소 지정증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영업장 면적 : m² (객석면적 : m²)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제 호)
- 영업의 형태 : 춤 허용업소
- 조 건 : 영업장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근 거 법 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의안 번호	1397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9. 28.(목)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9. 29.(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10. 12.(목)

2. 제안설명 요지(복지경제국장 조수관)

가. 제안이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안전관리 등 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1. 객석에서 춤 행위가 허용되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 2.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및 지정·변경 신청
(안 제4조~제6조)
- 3. 춤 허용업소는 공간, 방음, 소방 등의 안전기준 등(안 제7조)
- 4. 춤 허용업소 춤추는 시간은 영업시간(안 제8조)
- 5.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안 제9조~제10조)

다. 근거법규

-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원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